

직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루터교학원 정관 제87조 ~ 91조에 의하여 루터대학교 (이하“본교”라 한다)의 직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분장)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제 2 장 편 제

제3조(기구) 본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2005.2.17.개정),(2012.2.16.개정),(2014.2.25.개정),(2016.2.29.개정),(2016.9.7.개정),(2016.10.18.개정),(2016.12.30.개정),(2017.1.26.개정),(2017.2.17.개정),(2017.6.9.개정),(2017.8.31.개정),(2018.8.24.개정),(2019.2.19.개정),(2019.7.23.개정),(2019.12.31.개정),(2020.3.18.개정),(2020.4.28.개정),(2020.5.27.개정),(2020.9.18.개정),(2022.11.23.개정),(2023.08.02.개정)

대학행정 : 기획조정처, 총무처, 교목처, 교학처, 문헌정보관

대학: 신학과, 상담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언어치료학과, 사회혁신리더학과, 디아코니아교양대학
대학원 : 신학과, 상담심리학과, 언어치료학과

부속기관: 평생교육원, 인성교육원, 국제교육원, 디아코니아사업단(삭제), 대학성과관리센터(명칭변경), 교수학습역량개발센터, 학생상담지원센터, 디아코니아 인재개발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언어치료센터, 보건실, 출판부, 학보사, 방송국, 감사실, 루터미래교육원(삭제), 미래교육과정센터, 취·창업지원센터, 성인학습지원센터

부설연구소 : 루터연구소, 루터상담연구소, 루터언어인지치료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

총장직속기관 :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두드림(삭제) 데이터분석센터, 산학협력단, 미래전략사업단, 루터대학교 예비군소대, 디아코니아센터, 인권센터

제4조(위원회) 본교의 각종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 설치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3 장 조 직

제 1 절 행정본부

제5조(교목처) ① 학생 전체의 신앙 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의 신앙상담을 위하여 교목처를 둔다. (2018.8.24.개정)

② 본교의 홍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2018.8.24.개정)

③ 복지시설로 생활관과 식당을 둔다. (2018.8.24.개정)

제6조(교학처) ① 교학처에 교무팀과 학생지원팀을 둔다. (2014.2.25.개정),(2016.9.7.개정),(2017.8.31.개정),(2018.8.24.개정),(2020.5.20.개정),(2022.11.23 개정)

② 학생지원팀을 두고, 산하에 장애학생지원센터, 디아코니아 인재개발센터를 둔다.(2014.2.25.개정),(2016.9.7.개정),(2016.12.30.개정),(2017.8.31.개정),(2018.8.24.개정),(2020.9.18.개정),(2022.11.23. 개정)

③ 학생지원팀은 입학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2018.8.24.개정),(2019.7.23.개정),(2022.11.23. 개정)

제6조의2 삭제 (2018.8.24.)

제7조(총무처) 총무처에 총무관리팀과 시설관리팀을 둔다. (2012.2.16.개정),(2016.9.7.개정),(2016.12.30.개정)

제7조의2(기획조정처) 기획조정처에 기획팀과 혁신교육팀을 둔다. (2016.2.29.신설),(2016.9.7.개정),(2016.12.30.개정),(2017.8.31.개정),(2019.05.27.개정),(2022.11.23. 개정)

제7조의3 삭제 (2018.8.24.)

제7조의4 삭제 (2018.8.24.)

제7조의5(문헌정보처) 삭제 (2018.8.24.신설),(2020.3.18.삭제)

제7조의6(감사실) 교내에 감사실을 둔다. (2019.12.31.신설)

제7조의7(문헌정보관) 교내에 문헌정보관을 둔다. (2020.3.18.신설),(2020.4.28.개정)

제7조의8(루터미래교육처) (삭제) (2022.5.24.신설),(2022.11.23.삭제)

제 2 절 부속기관

제8조 삭제 (2018.8.24.)

제9조(출판부) 교내에 출판부를 둔다. (2016.9.7.개정),(2016.12.30.개정)

제10조 삭제 (2018.8.24.)

제11조 삭제 (2016.9.7.)

제11조의2(방송국) 교내에 방송국을 둔다. (2016.9.7.신설),(2016.12.30.개정)

제12조 삭제 (2005.2.17.)

제13조(평생교육원) 교내에 평생교육원을 둔다. (2005.2.17.개정)

제13조2(산학협력단) (2016.2.29.신설),(2016.12.30.개정)

제13조3(언어치료센터) (2016.2.29.신설),(2016.12.30.개정)

제13조4(루터상담소) 삭제 (2016.9.7.)

제13조5 삭제 (2018.8.24.)

제13조의6(교수학습역량개발센터) 교수학습역량개발센터는 기획조정처 산하에 둔다. (2016.2.29.신설),(2016.12.30.개정),(2017.8.31.개정),(2018.8.24.개정),(2020.5.20.개정),(2020.9.18.개정)(2022.11.23. 개정)

① 교수학습역량개발센터에 교수학습지원팀과 교육역량개발팀을 둔다.(2020.05.27.신설)

제13조7(인성교육원) (2016.2.29.신설),(2016.12.30.개정)

제13조8(국제교육원) (2016.2.29.신설),(2016.12.30.개정)

제13조의9(디아코니아 인재개발센터) [제목개정 2020.9.18.]

① 디아코니아 인재개발센터는 교학처 산하에 둔다. (2016.9.7.신설),(2016.12.30.개정),(2017.8.31.개정)(2018.8.24.개정),(2020.9.18.개정),(2022.11.23. 개정)

제13조의10(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는 교학처 산하에 둔다. (2016.12.30.신설),(2017.8.31.개정)(2018.8.24.개정)

제13조의11(학생상담지원센터) 학생상담지원센터는 기획조정처 산하에 둔다. (2016.12.30.신설),(2017.8.31.개정),(2018.8.24.개정),(2020.9.18.개정),(2022.11.23. 개정)

제13조12(디아코니아사업단) (삭제) (2016.12.30.신설),(2020.3.18.개정),(2022.11.23.삭제)

제13조13(보건실) (2016.12.30.신설)

제13조14(학보사) (2016.12.30.신설)

제13조의15 삭제 (2018.8.24.)

제13조의16 삭제 (2017.8.31.)

제13조의17 삭제 (2017.6.9.신설),(2017.8.31.개정),(2019.05.27.삭제)

제13조의18(대학혁신지원사업단) 본교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을 둔다. (2019.2.19.신설)

제13조의19(데이터분석센터) 본교에 데이터분석센터를 둔다. (2019.2.19.신설)(제목개정 2022.11.23.)

제13조의20(루터미래교육원) 삭제 [본조신설 2020.9.18.], (2022.5.24.개정)

제13조의21(미래교육과정센터) 미래교육과정센터는 기획조정처 산하에 둔다. (신설 2020.9.18.신설),(2022.11.23.개정)

제13조의22(인권센터) 인권센터는 총장실 산하에 둔다. (2022.2.10.신설),(2022.11.23.개정)

제13조의23(대학성과관리센터) 대학성과관리센터는 기획조정처 산하에 둔다. [본조신설 2022.11.23.]

제13조의24(디아코니아센터) 디아코니아센터는 총장실 산하에 둔다. [본조신설 2022.11.23.]

제13조의25(성인학습지원센터) 성인학습지원센터는 교학처 산하에 둔다. [본조신설 2022.11.23]

제13조의26(취창업지원센터) 취창업지원센터는 기획조정처 산하에 둔다. [본조신설 2022.11.23]

제 3 절 부설 연구소

제14조(루터연구소) 본교에 루터연구소를 둔다.

제15조 삭제 (2012.2.16.)

제15조1 삭제 (2016.9.7.)

제15조2 삭제 (2016.9.7.)

제15조3(루터상담연구소) (2016.2.29.신설)

제 4 절 총장 직속기관

제15조4(루터대학교 예비군소대) 본교에 루터대학교 예비군소대를 둔다. (2017.1.26.신설)

제 4 장 직위 및 직무

제 1 절 총 칙

제16조(총장) 총장은 대학을 대표하며 교무를 통괄하고 교직원을 감독·지휘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 2 절 교직원

제17조(교원) ①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겸임교수, 석좌교수, 특임교수를 둔다. (2012.2.16.개정),(2016.9.7.개정)

제18조(직원) ① 일반직은 3급부터 9급까지 둔다. (2012.2.16.개정),(2017.2.17.개정)

② 삭제

③ 삭제

④ 학교 형편에 따라 연구원, 임시직(조교)을 둘 수 있다. (2016.9.7.개정),(2017.2.17.개정)

⑤ 직급별 정원은 정관의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 절 임 기

제19조(보직 및 임기) 각 보직의 임기 및 임면은 정관의 정한 바에 따르며, 정관에 의하지 않은 보직은 총장이 임면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9조1(보직분류표) 본교의 보직은 <별표 2>에 보직분류표에 따른다. (2019.12.12.신

설)

제 4 절 직 무

제20조(직무) 각 부서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관장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2016.9.7.개정),(2016.10.18.개정),(2016.12.30.개정),(2017.1.26.개정),
 (2017.2.17.개정),(2017.6.9.개정),(2017.8.31.개정),(2018.8.24.개정),(2019.2.19.개
 정),(2019.7.23.개정),(2019.12.31.개정),(2020.3.18.개정),(2020.4.28.개정),(2020.5.20.
 개정),(2020.5.27.개정),(2020.9.18.개정)

루터대학교 기구표



